

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일자 : 2001. 2. 12

발 의 자 :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미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상부기관의 개정권고안과 자체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타시군의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골자

- 제10조 제4항에서 “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”를 단서조항으로 하여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수정함.

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(안)

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

제5조제2항중“매년 1월말까지”를 “매년 12월말까지”로 한다.

제10조제4항에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다음에
“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”를 추가한다.

제14조중“협의회 위원”을 “협의회 위원 및 실무위원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,운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수정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,시행)①(생략) ②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에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(생략)	제5조(시행계획의수립,시행)①(현행과같음) ②----- ----- 매년12월말까지----- ----- ③(현행과 같음)	제5조(시행계획의수립,시행) (개정안과 같음) ③(개정안과 같음)
제10조(구성)① ~③항(생략) ④협회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	제10조(구성) ① ~③항(현행과 같음) ④협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	제10조(구성)① ~③항(개정안과 같음) ④협회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다만 협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14조(수당 등)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4조(수당 등)----- 협의회 위원 및 실무위원에 ----- ----- -----	제14조(수당 등) (개정안과 같음)
제16조(기능)(생략) 1.~7.(생략) <u><신설></u>	제16조(기능)(현행과 같음) 1.~7.(현행과 같음) <u>8.인터넷 홈페이지 설치,운영</u>	제16조(기능) (개정안과 같음)